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]

□ 점검일시 : 2024.02.02 (금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박찬표,이태형,배현섭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차량기지 초입부 띠장 및 어스앵커 미설치 구간은 소단이 미형성되어 있고, 배면은 중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인바,

- 수시로 안정성 검토 및 가시설 조속 설치바람.

※ 안전시공 기본사항 10대항목 위반

1. 시공계획서 작성 및 감리 검토·승인을 받아 시공

5. 토류벽시공 시 강재 설치시기 준수 및 작업 순서 준수(선행굴착 등 금지)

※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 위반

1) 건설사업기술인

-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

-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 소홀

2) 건설기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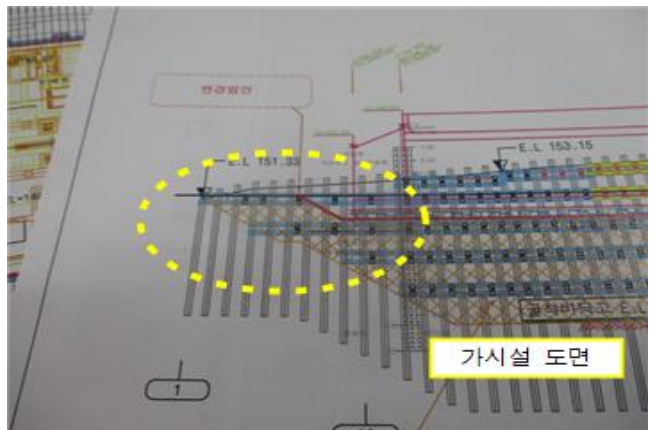
- 시공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, 확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

-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

※ 위험성평가 권고사항

※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

제87조(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)



○ 시공계획 및 승인(도시철도사업부)

- 굴착 작업구간(H=4.6m)은 다음 사항 보완바람.

1) 굴착완료 시까지 시공계획 미작성 및 검측 미실시

2)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사면경사

(1:1.2~1.5)미준수

3) 안전난간 미설치

4) 가설계단 설치미흡

※ 위험성평가 권고사항

※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 위반

1) 건설사업기술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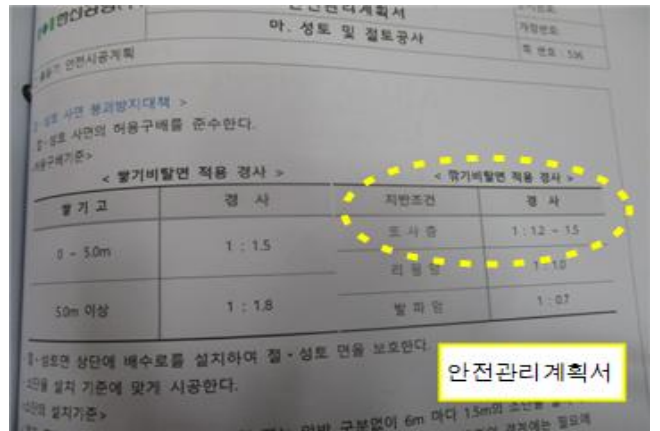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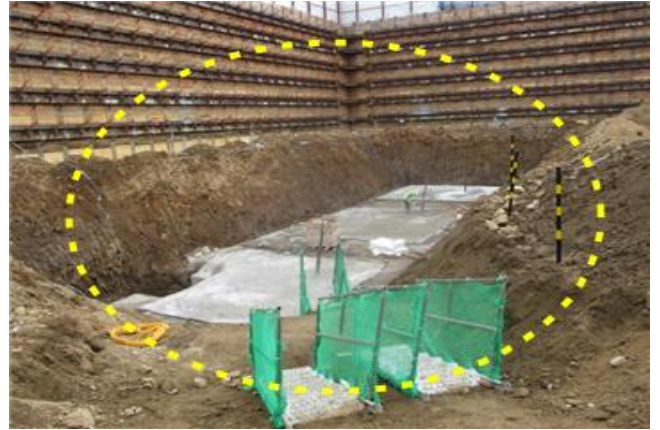
-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

2) 건설기술인

-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

※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

제87조(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가시설 상부(H≒12m)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토록 안전관리계획서에 계획하였으나, 웨빙띠만 설치되어 있으며,

- 가설분전반 관리를 위하여 근로자가 출입하고 있어, 추락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보완바람.

※ 위험성평가 권고사항

※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 위반



1) 건설사업기술인

- 시공자의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

2) 건설기술인

-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

※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

제87조(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)



○ 건설기계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철근 인양중인 카고크레인의 아웃트리거의 거치가 부적정하니 보완바람.

※ 안전시공 기본사항 10대항목 위반

10. 아웃트리거 적정거치

※ 위험성평가 권고사항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 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업무 등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안전대 미착용하고, 통행로 미설치로 근로자 철근을 잡고 고소작업 중 추락사고 위험.

※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항목 위반

2. 고소작업자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고리체결

※ 위험성평가 권고사항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기타 안전관리(도시철도사업부)

- 가시설 용단작업시 발생재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점검결과 보호구 지급이 미흡하니 보완 바람.

- ※ 위험성평가 권고사항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(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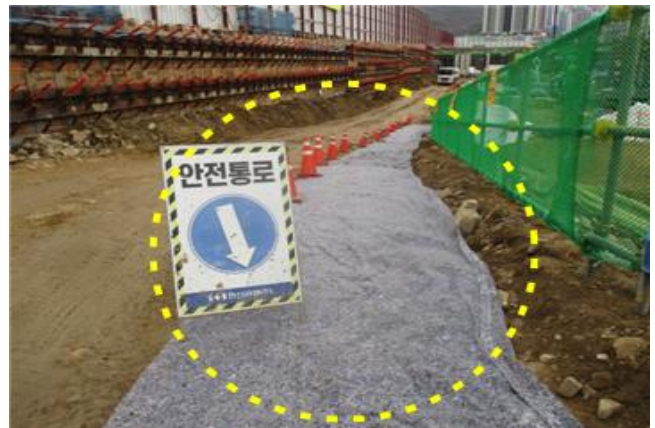
| 일련번호 | 작업종류 | 작업장 | 작업시간 | 작업장 | 작업시간 | 작업장 | 작업시간 | 작업장 | 작업시간 |
|------|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--|
| 1 | 가시설 | 1차 | 10/12 | 가시설 | 1차 | 10/12 | 가시설 | 1차 | 10/12 |
| 2 | 가시설 | 2차 | 10/12 | 가시설 | 2차 | 10/12 | 가시설 | 2차 | 10/12 |
| 3 | 가시설 | 3차 | 10/12 | 가시설 | 3차 | 10/12 | 가시설 | 3차 | 10/12 |
| 4 | 가시설 | 4차 | 10/12 | 가시설 | 4차 | 10/12 | 가시설 | 4차 | 10/12 |
| 5 | 가시설 | 5차 | 10/12 | 가시설 | 5차 | 10/12 | 가시설 | 5차 | 10/12 |
| 6 | 가시설 | 6차 | 10/12 | 가시설 | 6차 | 10/12 | 가시설 | 6차 | 10/12 |
| 7 | 가시설 | 7차 | 10/12 | 가시설 | 7차 | 10/12 | 가시설 | 7차 | 10/12 |
| 8 | 가시설 | 8차 | 10/12 | 가시설 | 8차 | 10/12 | 가시설 | 8차 | 10/12 |
| 9 | 가시설 | 9차 | 10/12 | 가시설 | 9차 | 10/12 | 가시설 | 9차 | 10/12 |
| 10 | 가시설 | 10차 | 10/12 | 가시설 | 10차 | 10/12 | 가시설 | 10차 | 10/12 |
| 11 | 가시설 | 11차 | 10/12 | 가시설 | 11차 | 10/12 | 가시설 | 11차 | 10/12 |
| 12 | 가시설 | 12차 | 10/12 | 가시설 | 12차 | 10/12 | 가시설 | 12차 | 10/12 |
| 13 | 가시설 | 13차 | 10/12 | 가시설 | 13차 | 10/12 | 가시설 | 13차 | 10/12 |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암버력 위에 부직포를 덮어서 안전통로를 조성하여 근로자 이동시 발목부상 등 전도재해 우려있음.

- 사면단부에 설치된 가설계단이 짧고 미고정되어 있고, 웨빙띠 사이로 자재 운반시 안전사고 우려있음.

- ※ 근로자보호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
- 5. 가설통로 설치
- ※ 위험성평가 권고사항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


○ 거푸집동바리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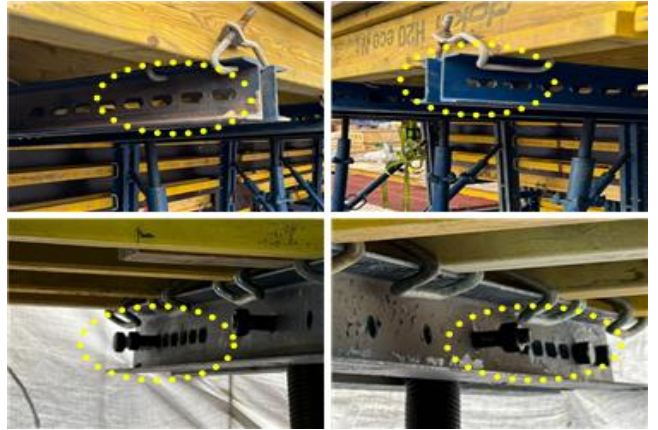
- 거푸집 동바리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이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선 요망

- ①현치부 수직경사구간 받침목을 보완하여 설치요망
- ②바닥 거푸집 볼트가 미설치되거나 타설이 진행된 곳은 볼트가 풀려있으므로 조립도에 따른 볼트 체결 관리 요망
- ③동바리 하부는 잭베이스를 이용하여 설치하도록 하고, 수직재 접합부는 흔들리지 않도록 연결요망

※ 위험성평가 권고사항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제332조의2(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시 안전조치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공사장 가설통로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개선 조치 요망①바닥 거푸집 제작작업장 주변 작업 발판이 불균형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개선 필요

- ②바닥 거푸집 제작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작업발판이 불균형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개선 필요
- ③가설밴트 수직승강로와 교량 측면(분전반 취



급)으로 가는 가설통로가 미설치 되어 있음

- ※ 위험성평가 권고 사항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장기간 노출되는 추락 단부는 접금방지용도의 로프가 아닌 강관으로 된 구조로 설치하여 근로자 추락재해 예방 조치 요망

- ※ 위험성평가 권고사항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)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인력 굴착토 양중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개선 요망

- ① 현장에서 제작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실시하고 안전율을 확보 요망
- ② 샷시는 측면으로 양중하지 않도록 구조 개선 요망
- ③ 혹 해지방지장치 기능을 사용할수 없는 섬유 로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

※ 위험성평가 권고사항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168조(변형되어 있는 혹 샷시 등의 사용금지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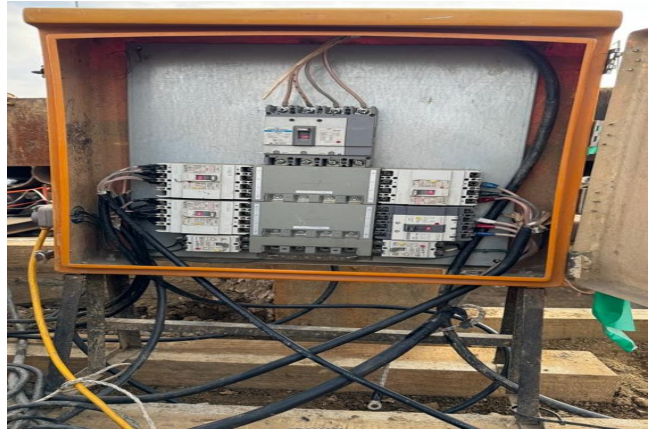


○ 감전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전함 외함접지 미설치 되어있고 접지 연결이 낙하물방지망으로 인해 도전성이 낮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즉시 시정 요망

※ 위험성평가 권고사항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(전기기계기구의 접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열풍기에 사용되는 등유 저장탱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화재 경고 표지 부착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시고 유사시 초기진압을 위한 소화기를 추가 설치하시길 바람
- 현장 곳곳에 소분된 등유가 배치되어 있으므로 관리하시길 바람

- ※ 위험성평가 권고사항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(위험물 등의 보관)



○ [모범사례]작업장조도 확보(도시철도사업부)

- 부피가 작고 파손 위험이 적은 LED 조명기구를 강관 압입구간에 설치하여 근로자 통행로 확보에 도움이 되고 전구 충돌에 의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임
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(조도)

